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초빙 공고

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의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
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연금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.

1. 공모직위 및 인원

○ 연금이사 1명(임기 2년)

※ 임기는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

2. 연금이사 관장업무

▸ **가입지원실, 연금급여실, 고객지원실, 재산관리지원추진단, 국제협력센터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및 국제연금지원센터** 업무 관장

- 사업장 적용 및 가입자 관련 기준관리, 제도, 법령 등 개선에 관한 사항
- 연금급여 관련 절차, 제도, 법령 등 기준관리와 개선, 수급자 변동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
- 고객서비스 관련 종합조정, 고객만족도 조사, 고객제안, 민원사무처리,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, 관련 제도 및 법령 등 개선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협정 체결, 시행, 제도 운영 및 홍보,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등에 관한 사항
- 정보연계센터 운영, 5개 기관 간 협조,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관련 네트워크 등 운영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및 연금 관련 업무, 해외수급자 사후관리, 외국인 상담 등에 관한 사항

3. 자격요건

○ 일반요건

• **국민연금 제도** 전반에 관하여 **학식과 경험이 풍부**하고 **덕망**이 있는 사람
• **미래지향적 비전**과 **조직관리 능력**을 갖춘 사람

○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1.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〈 **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)** 〉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, 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※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관련 결격사유는 2026. 10. 22. 법 시행 예정(결격사유에 적용)

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

4. 제출서류

○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
※ [첨부]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참조

○ 최종 학력증명서(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포함) 1부

○ 경력(재직)증명서, 자격증·면허증 사본,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등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경력(재직)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

5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6. 9. 30.(수) ~ 10. 14.(수) 18:00

○ 접 수 처 : (우)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(만성동)
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추천위원회(7층, 인사혁신실)

○ 접수방법 : 등기우편, 이메일(npshr@nps.or.kr), 방문(대리접수 가능) 중 택일

※ 모든 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, 방문접수는 토요일·공휴일 제외

※ 이메일로 접수한 경우, 추후 안내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6. 심사방법

○ 서류심사

-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및 직위 적합성 심사
- 직무수행 계획이 공단의 발전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

○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

-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영능력, 리더십 등 직무수행 능력 심사
- 윤리의식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심사

※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○ 인사검증(임용후보자)

- 임용후보자의 임용구비서류, 신원조사, 결격사유 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 취소

※ 인사검증 관련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

7. 기타사항

○ 서류심사 시 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,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(원본)는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구비서류(경력 입증자료)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해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,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(npshr@nps.or.kr) 또는 ☎ 063-713-5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NPS 국민연금공단
연금이사 추천위원회